

엘에이 교회

어린이 및 영피플 보호 정책

엘에이 교회는 어린이와 영피플사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들이 교회의 보살핌 아래 맡겨질 때 그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CYP는 방치나 신체적 또는 성적, 정서적 학대의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교회 장로와 이사회(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정의 및 차이점

이 문서의 목적:

- **엘에이 교회** (또는 **교회**)는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시에서 하나의 입장을 바탕으로 한 그리스도인의 모임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지명된 장로들이 감독합니다.
- **엘에이 교회** (또는 **교회**)는 **교회**를 대신하여 비즈니스 업무의 관리를 위해 캘리포니아주에 등록된 법인을 지칭합니다. **엘에이 교회**는 선출된 이사회에 의해 감독을 받습니다.
- **어린이**는 추가로 자격 정의를 하지 않는 한 6학년 이하의 어린이를 지칭합니다.
- **영피플**은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생을 지칭합니다.
- **CYP**는 집합적 또는 개별적으로 **어린이와 영피플(children and young people)**을 지칭합니다.
- **부모**는 **CYP**의 주된 보호자를 지칭하며, **부모**는 친부모나 양부모 또는 법적 보호인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 **봉사자**는 신원 확인을 통과하고, 직원 또는 자원봉사자 계약서에 서명했으며, **CYP**를 돌보도록 **교회** 장로들의 승인을 받은 **교회**의 직원 또는 자원봉사자를 의미합니다.
- **교회 시설**은 **교회**가 소유하거나 리스한 부동산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교회**가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운동장, 건물 및 땅이 포함됩니다.
- **교회 후원 CYP 중심 활동**은 **CYP**를 위해 **봉사자**들이 편성한 일반 또는 특별 활동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어린이 돌봄, 어린이 집회, 영피플 집회, **CYP**를 위한 컨퍼런스 등이 포함됩니다.
- **교회 관련 CYP 중심 활동**은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교회** 구성원이 주도하는 활동입니다. 여기에는 구성원 가정에서의 집회, 소그룹 집회, 이웃 어린이 집회, 야외활동을 포함하여 **교회 시설**을 사용하도록 허가 받은 활동이 포함됩니다.

- 이러한 활동 중에 *교회 후원 CYP 중심 활동*이나 *교회 관련 CYP 중심 활동*이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 *CYP*에 대한 감독 책임의 각 기준이 적용됩니다.
- 목양은 *CYP*에 대한 영적 및 실질적 돌봄을 의미합니다. 영적 돌봄에는 기도, 교통, 성경 읽기 및 영적 성장을 배양하기 위한 기타 활동이 포함됩니다. 실질적 돌봄에는 함께 식사하기, 숙제 지원, 교통편 지원, 야외 레크리에이션 등이 포함됩니다.
- *개인 목양*은 *봉사자*가 관여되었는지 여부를 떠나서, *부모가 자녀* 또는 *영피플*에 대한 돌봄을 승인한 방식을 의미합니다.

목적

*엘에이 교회*는 다음을 위해 노력합니다.

- *CYP*를 위한 안전한 환경 제공,
- *CYP*가 자신의 연령과 성숙도에 적합한 그리스도인의 교통과 동반자화를 경험할 수 있는 분위기에서 영적 교육을 제공,
- 모든 *CYP*의 가치를 인정하고, 경청하며, 존중할 뿐만 아니라 안녕과 보호를 촉진함,
- *CYP*가 합당한 영적 생활을 실행하고 레크리에이션과 사교적 그룹핑을 포함한 합당한 인성안에서의 생활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함,
- *봉사자*가 부당한 학대 고발에 대한 두려움 없이 *CYP*를 돌볼 수 있는 환경 제공,
- *엘에이 교회*가 후원하는 활동에서 *CYP*를 돌보는 모든 사람들의 신원조사를 하고, 교육시키며, 봉사를 모니터링함,
- 의심이 되는 학대 또는 방치에 대한 모든 신고를 즉각적으로 처리함,
- 행정 당국에 적합하게 보고하고 모든 법적 가이드라인을 준수함.

정책의 일반 성명서

*교회*는 *교회 후원 CYP 중심 활동*에 참여하는 *CYP*에 대해 안전 조치를 취합니다. *CYP*가 참여하는 다른 행사나 모임은 직접적인 감독을 제공하는 *교회*의 책임과 능력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여기에는 구성원의 가정, 공원, 사용 허가를 받은 *교회 시설*, 그리고 구성원이 상호 돌봄, 식사, 레크리에이션 활동, 기도 및 교통을 위해 만날 수 있는 비공식적인 장소에서의 소규모 또는 대규모 모임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CYP*가 *교회 후원 CYP 중심 활동*이 아닌 *교회 후원 활동*이나 *교회 관련 활동*에 참여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교회* 또는 *봉사자*가 감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교회 후원 CYP 중심 활동*이외의 다른 모든 환경에서 *CYP*의 안녕을 보호하는 책임은 직접적으로 해당 *CYP*의 부모에게 있으며 *교회*는 그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감독

위원회는 최소 2명의 *교회* 구성원을 지명하여 *CYP 보호 규제준수 모니터인*(또는 *규제준수 모니터인*)으로 봉사하게 합니다. *규제준수 모니터인*은 장로의 감독과 안내 하에 *봉사자*와 자원봉사자에 대한 신원조사, 교육, 이 정책의 이행에 관련된 모든 기록 보관에

대한 절차를 수립할 책임을 집니다. 규제준수 모니터인은 신원조사를 수행하고 지원서를 검토할 권한을 부여 받습니다.

모든 지원서, 신원 조회 보고서, 메모 및 *CYP*에 대한 지원자의 봉사과 관련하여 작성된 기타 서류는 *규제준수 모니터인*과 특정한 장로만이 볼 수 있는 보안 파일에 보관됩니다. 모든 *CYP* 봉사자들의 파일은 영구적으로 보관됩니다.

지원서 양식에 필요한 정보의 개인적 성격 때문에, 지원자는 특정 규제준수 모니터인(예: 관계가 없는 장로 등)에게 자신의 지원서와 신원 조회를 처리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봉사자에 대한 기준

1. *CYP*를 돌보고자 하거나 *교회가 후원하는 CYP 중심 활동*에서 *CYP*와 정기적으로 만나게 될 모든 성인은 반드시 다음을 이행해야 합니다.
 - a. 직원 또는 자원봉사자 지원서 작성,
 - b. 적어도 2명 이상의 가족이 아닌 사람의 추천서 제공,
 - c. *엘에이 교회*의 장로가 선택한 제 3자 봉사를 통한 신원조사를 받을 것,
 - d. *CYP*를 돌볼 수 있도록 *엘에이 교회*의 장로로부터 승인을 받을 것.

이 요건은 *교회*의 디렉터와 임원을 포함한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교회*의 장로들 또는 *CYP* 봉사에서 리더 역할을 맡은 *봉사자들이* 해당 지원자를 알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 30세 이상의 미혼 남성은 *어린이*를 돌볼 수 없습니다.
3. 35세 이상의 미혼 남성은 *영피플*을 돌볼 수 없습니다.
4. 영피플은 해당 봉사에 대한 책임은 없지만 학습자로서, 해당 영피플의 부모가 작성한 영피플 봉사 참여 합의서를 제출하고 *교회*에서 적어도 2명의 장로가 승인한 경우, *어린이*에 대한 봉사 제공 시 적어도 2명의 봉사자와 함께 합류할 수 있습니다.

교회 후원 CYP 중심 활동을 위한 표준

1. 일반 원칙: *봉사자*는 "2인 규칙" 또는 "오픈 도어 정책"을 항상 준수해야 합니다.
 - a. "2인 규칙"에서는 모든 *교회 후원*의 *CYP 중심 활동*을 2명의 *봉사자*가 감독하되, 적어도 이 중 한 명은 25세 이상이어야 함을 요구합니다. *봉사자*는 자신과 *CYP* 단둘만이 있는 상황을 피할 수 있도록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 b. "2인 규칙"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 "오픈 도어 정책"이 적용됩니다. 방이나 장소의 문을 열어 놓거나, 활동을 개방된 장소에서 수행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봉사자*는 부모에게 두 번째 *봉사자*의 부재를 통보하고 두 번째 *봉사자*가 도착할 때까지 부모의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 c. "2인 규칙"은 어린이집에서 유치원 연령의 어린이에 이르기까지 의무사항입니다. "오픈 도어 정책"은 부모가 단독 봉사자와 자녀가 함께 있는 것에 대한 서면 동의를 제출할 때까지 이 연령 그룹을 관리하는 데 대한 옵션이 아닙니다.
- 2. 신원조사를 받은 성인이 없는 상태에서 10대 자원 봉사자가 CYP를 관리하도록 둘 수 없습니다.
- 3. 30명 이하의 CYP가 있는 각 방은 방 바깥에서 방해물 없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 4. 부모들은 언제든지 교회 관련 CYP 중심 활동을 방문하여 관찰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활동을 방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 5. CYP에게 봉사를 제공하지 않는 부모가 아닌 사람은 교회 관련 CYP 중심 활동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단, 해당 연령 그룹에 대한 봉사를 감독하는 봉사자와 적어도 한 명의 장로가 명시적으로 허가하는 특별한 목적의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6. 어떠한 경우에도 봉사자가 임의의 CYP에게 어떠한 형태이든 체벌을 가할 수 없습니다. 자해, 다른 아이에 대한 위해 또는 물건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신체적 제약이 필요한 경우, 부모에게 (또는 연락이 안되는 경우 비상 연락처로) 연락하여 가능한 신속하게 CYP를 데려가도록 해야 합니다. 현장에 있는 봉사자는 이 사건을 규제준수 모니터인과 부모에게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 7. 어떠한 CYP도 혼자 활동을 이탈하거나 봉사자의 감독 영역을 벗어난 장소에 남겨져서는 안 됩니다.
- 8. 교회 후원 CYP 중심 활동 이후, 적어도 2명의 봉사자(적어도 한 명은 25세 이상)가 마지막 CYP가 떠날 때까지 남아 있어야 합니다. 상기 활동의 완료로부터 20분 이후, CYP는 한 명의 25세 이상의 성인과 남겨질 수 있습니다. 날씨가 괜찮다면, CYP와 해당 감독 담당자는 교통편이 도달할 때까지 공개된 바깥에서 기다리게 됩니다.
- 9. 교회 구성원의 가정에서 교회 후원 CYP 중심 활동을 하게 되는 경우 봉사자는 반드시 활동 이전에 적어도 2명의 장로가 서명한 서면 허가서를 받아야 합니다. 가정에서 2개월에 한 번 이상 해당 활동을 하게 된다면, 해당 교회 구성원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자원 봉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린이 사인-인, 사인-아웃 절차

- 1. 부모가 봉사자의 감독 하에 초등학교와 취학 전 어린이를 남겨 두는 모든 교회 후원 CYP 중심 활동에서, 해당 어린이들에 대해 부모 또는 부모의 지정인이 사인-인 해야 합니다. 해당 어린이에 대한 사인-인을 한 부모 또는 부모의 지정인만이 사인-아웃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어린이를 인계하는 봉사자가 사인-아웃을 한 해당 부모 또는 부모의 지정인에게 연락을 하여 허락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유일한 예외는 아래에서 다루는 바와 같이 비상 시에 허용됩니다.
- 2. 부모가 어린이를 사인-인 하기 전에, 부모가 부모 동의 및 면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여 규제준수 모니터인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동시에 이 정책의 사본을 부모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비상 연락처의 목록은 어린이가 있는 동안 해당 어린이를 감독하는 봉사자가 바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린이를 위한 일반 안전

1. 그 어느 때라도 어린이는 관리실이나 기계실 즉, 위험한 화학물질이나 전기장비가 있는 곳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봉사자가 동반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 아래에 기술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어린이도 봉사자의 시야 밖으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3. 의료 응급 상황을 제외하고 어떠한 어린이도 해당 어린이를 데리고 나가도록 승인된 사람 이외에는 봉사자를 포함하여 그 누구와도 해당 장소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의료 응급 상황 시에는 부모에게 해당 어린이를 데려가는 의료 시설을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화장실 사용과 감독

1. 교회 시설을 사용하는 교회 후원 또는 교회 관련 활동에 있어서, 화장실은 개인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남성용 또는 여성용으로 지정되어 사용되어야 합니다.
2. 어린이용 화장실 사용의 감독은 연령과 필요에 따라 달라집니다. 화장실 훈련이 되지 않은 유아의 경우 집회소 또는 바로 가까이에서 돌보아야 합니다. 취학 전 아동으로 화장실 훈련을 받은 어린이는 항상 성인의 감독 없이 둘 수 없지만, 어린이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면서 봉사자의 시야 내에 두어야 합니다.
3. 이러한 화장실 사용 감독 시 폐쇄된 화장실에 어린이 혼자 두는 일을 피해야 합니다.
4. 유치원생부터 2학년생까지는 봉사자가 화장실까지 따라가야 하지만 화장실 사용자 자체는 스스로 관리해야 합니다. 3학년생부터 6학년생까지는 시설의 구조와 화장실까지 가는 경로가 안전한지 여부에 따라 호위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경우에 봉사자는 자신의 생물학적 성별용 화장실에만 들어가야 합니다.
5. 신체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CYP에게 필요한 모든 편의시설은 미리 부모와 상의해야 합니다.

교회 관련 CYP 중심 활동

교회 후원 CYP 중심 활동들을 제외하고, CYP에 대한 적합한 감독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온전히 해당 CYP의 부모의 책임입니다.

가정에서의 교회 관련 CYP 중심 활동

교회에서는 교회 관련 CYP 중심 활동을 교회 구성원의 가정에서 하는 경우 동일 가족 구성원이 아닌 최소 2명의 성인이 감독하도록 권고합니다.

목양 활동

1. 목양 활동은 비록 해당 활동이 교회 후원 활동 중에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교회 후원 활동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2. CYP 와의 모든 개인 목양 세션은 시야에 장애물이 없는 장소에서 수행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장소는 부모가 승인한 공공 장소 또는 일반적인 거리에 다른 사람이 있는 교회시설의 방이 될 수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전체 세션 동안 방문을 열어 두어야 합니다. 단, 전체 방을 분명하게 볼 수 있는 창문이나 벽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3. 만약 부모와 봉사자가 CYP 에 대한 특정 개인 목양 활동을 승인하는 개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봉사자는 교회와 체결한 계약의 범위를 벗어난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봉사자는 교회에서 제공할 수 있는 법적 보호를 받을 자격이 없게 됩니다.
4. 이 권장사항을 따르지 않는 봉사자는 봉사 제한 또는 탈퇴 처분을 받게 됩니다.

교회 후원 이벤트 왕래 교통 수단

1. 때로는 봉사자가 교회 후원 활동 왕래 교통 수단을 주선하지만, 적합한 교통 수단을 주선해야 할 책임은 온전히 해당 CYP 의 부모에게 있습니다. 교회 후원 CYP 중심 활동을 왕래하는 교통 수단은 교회 후원 활동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2. 교회는 봉사자가 CYP 에 대한 교통 수단을 제공하기 전 해당 부모가 CYP 의 안전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갖도록 지정하고 봉사자를 자원 운전자로 승인하는 부모 동의 및 면제 계약서에 서명을 받도록 권장합니다. 봉사자와 부모 간의 개인 계약 하에 제공되는 CYP 에 대한 교통편은 교회에서 후원하거나 권장하지 않으며 해당 부모와 봉사자가 자신의 위험을 감수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3. 만약 CYP 의 교통편 제공에 사용되는 차량이 교회 소유이거나 리스 차량인 경우, 자원 운전자는 25 세 이상의 봉사자이어야 하며, 유효한 운전 면허증을 소지하고 유효한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4. CYP 를 운송하는 봉사자는 사용하는 차량의 소유권에 상관없이 차량을 운행하는 동안 핸드프리 전자기기로만 소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비게이션에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경우, 출발하기 전 프로그램되어 있어야 하며 차량을 운행하는 동안에는 소통할 수 없습니다.
5. CYP 를 운송하는 봉사자는 어떠한 진정제 성분의 약물에 의한 영향도 받지 말아야 합니다.

여행 시 숙박

CYP 가 자신의 가족 이외의 사람들과 단체로 숙박 여행 시, 봉사자가 함께 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 한 방에 CYP 와 2 명의 봉사자가 있거나 적어도 3 명의 영피플들이 한 명의 봉사자와 함께 있어야 함.

- "방 1 개에 하나의 생물학적 성별" 정책 유지

어떠한 경우에도 방을 잠귀서는 안됩니다. 즉, 적합한 모니터링을 위해 다른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어야 합니다.

신고

의심되는 어린이학대에 대한 신고 절차

누군가 이 정책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는 뭔가를 목격하게 된 경우, 또는 CYP 에 대한 취급에 관하여 우려를 갖게 된 경우, 해당 행동을 규제준수 모니터인 및/또는 디렉터와 장로에게 즉시 보고하여 조사를 착수하도록 해야 하고 적합한 경우 시정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캘리포니아 법에서는 "의무 신고자"라고 불리는 특정 분류의 사람들이 아동 학대 또는 방치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주 당국 또는 지역 법 집행기관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규정합니다.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행동 분류 중 일부에는 육체적 학대, 성적 학대, 고의적 잔학 행위 또는 정당하지 않은 체벌, 불법적 체벌이나 부상 및 방치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의무 신고자"에는 교회 직원, 목사, 법규준수 모니터인, 어린이와의 직접 접촉 및 관리가 필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봉사자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법적 요건과 신고를 안할 경우 형사죄로 기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CYP 와 함께 하거나 또는 CYP 를 관찰하는 모든 사람은 위에 기술한 바와 같이 아동 학대나 방치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반드시 바로 교회의 장로와 교회의 디렉터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참회의 소통"에 대해서는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참회의 소통으로 간주되는 것에 대한 정의는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의무 신고자"는 이러한 예외를 적용하기 전 현재의 법률을 참조하거나 또는 법적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폭행의 신체적 표시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열상 및 타박상
- 생식기 부위의 염증, 통증 또는 부상
- 배뇨의 어려움
- 앉을 때 불편함
- 찢어지거나 피가 묻은 속옷
- 성병

폭행의 행동적 징후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악몽
- 교회 건물, 어린이집 또는 프리스쿨 지역에 다가갈 때 불안한 느낌(평소에 부모와 헤어질 때 느끼는 불안을 넘어선 정도)
- 성인을 향한 신경질적이거나 또는 적대적 행동
- 성적 자의식 또는 성적 행동 표출

- 교회 친구 및 활동으로부터 멀어짐

폭행을 암시하는 언어 표현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아무개가 싫어요."
- "아무개가 우리끼리 있을 때 내게 뭔가를 했어요."
- "아무개하고 단 둘이 있기 싫어요."
- "아무개가 나를 우롱했어요."

신고서는 신고일자, 신고시간, 신고자 전화번호, 신고 접수자 성명, 신고 개요와 함께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모든 구두 신고는 기록한 증인이 있는 자리에서 해야 합니다.

의심되는 아동학대에 대한 대응 절차

1. 모든 혐의는 집행 당국 또는 변호사가 신속하게 조사합니다.
2. 모든 세부사항, 인터뷰와 정보는 조사에 합법적으로 관여하는 사람들에게만 비밀로 유지됩니다.
3. 교회의 공식 대변인은 장로 중의 한명 또는 장로들이 승인한 지정 대변인입니다. 언론, 변호사 또는 기타 당사자들로부터의 정보에 대한 질의나 요청은 공식 대변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공식 대변인 이외의 어떠한 사람도 공식 대변인의 명시적인 승인 없이 의심되는 아동 학대 사건에 관한 어떠한 정보도 공개할 수 없습니다.
4. 공식 대변인은 의심되는 아동 학대를 시나 카운티의 적합한 아동보호봉사국 및 교회의 보험회사에게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5. 희생자의 보호와 안전은 저희의 최우선 사항입니다. 저희는 아동 학대 의심 사건에 대한 관계 당국의 조사에 완전하게 협조합니다.
6. 저희는 혐의를 받는 사람에 대해 속단을 내리지 않는 않지만, 모든 아동 학대 주장을 심각하게 받아 들이며 희생자와 희생자 가족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사랑과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목자의 돌봄이 필요한 곳 어디에나 최선을 다합니다.
7. 우리는 피의자를 품위있게 존중하며 대할 것입니다. 만약 피의자가 교회 직원인 경우 해당인은 조사가 완료되고 관계 당국으로부터 혐의 없음 판정을 받게 될 때까지 자신의 업무에서 일시적으로 배제됩니다.
8. 공식 대변인이 언론, 신자들 및 일반 대중에게 제공하는 전달사항은 관련 된 모든 사람의 개인정보 비밀보장을 준수합니다.
9. 아동학대 의심 사건에 대응하는 모든 노력은 규제준수 모니터인 또는 장로가 문서화하며 보안과 비밀이 보장되는 파일에 유지됩니다.
10. 혐의에 관련된 희생자나 완전한 혐의 신고에 책임이 있는 사람 모두 보복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